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26-161호

(조달청공고번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평택시 안중출장소 재무관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15,092,167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6년 3종 시설물(교량) 보수공사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위치	삼계교(청북읍 삼계리 526-58번지), 어소2교(청북읍 한산리 395번지), 한산교(구)(청북읍 한산리 668번지)				
공사개요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300㎡), 교면방수(300㎡), 신축이음 교체(62m), 콘크리트 보수공(단면보수 : 260.3㎡), 부대공 1식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기 초 금 액	268,110,000원	
총공사금액 금392,39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관급)	관급자재(도급)	폐기물용역
	243,736,364원	24,373,636원	82,812,660원	38,457,340원	3,01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14.(화) 10:00 ~ 2026. 7. 16.(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6.(목) 11:00 평택시 안중출장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로서
-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 안전 등 공사 수행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발주前 발주부서(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간 사용협약 체결(최종 낙찰자에게는 사용협약서 사본 제공 예정)을 완료하였으며**, 신기술(특허)공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시 협약서 제출)**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특허 제10-2272929호	페로니켈 슬래그를 이용한 교면방수공법 (원피니트 공법)	숨인이엔씨 주식회사
특허 제10-2003506호	고인성 및 자기치유 기능을 가진 내진보강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시공방법	(주)와이비엘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같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031-8024-8434)**

7.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사후에 정산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계약내역서 상의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092,167원	2,918,308원	3,855,901원	383,465원	1,867,067원	5,362,426원	-	705,000원

11. 하도급 관련 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같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다.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마. 본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 사.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 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요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카.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파.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하.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 기타 공사 관련사항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031-8024-8434)
 - 공고문 관련사항은 민원총무과(☎031-8024-8041)로 문의 바랍니다.
 -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갑질 신고시스템 운영

○ 신고내용

-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 바로신고 ⇒ 공무원 부조리·갑질신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 표 ○○○ (인)

평택시 안중출장소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안중출장소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안중출장소(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

(서명 또는 인)